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G2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3.16

3. 정정 내용 :
- 모투자신탁(삼성미국코어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업무위탁계약 해지
- 법개정사항 반영 등

4. 정정요구·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③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조제2항의 모투자신탁 중 필요한 모투자신탁에 대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 되는 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 등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추 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	**(삭 제)**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생 략)	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 (현행과 동일)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③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8조 (수익자명부)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__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__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1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⑤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생 략) **(추 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 략) 1.~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생 략)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②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 략) 1.~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8조 (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제37조제1항제2호본문, 이 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 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투자신탁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②제1항에서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가격정보비용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__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 가)**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추 가)**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___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계감사 등)	**1. 대차대조표**	**1. 재무상태표**
제49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 전원 동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 전원 동의일**로부터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생 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__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 전원 동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생 략)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___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생 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__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생 략)
제50조 (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___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추 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___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

항 목	정정전	정정후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추 가)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추 가)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칙	(추 가)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모투자신탁(삼성미국코어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업무위탁계약 해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